

# 대구직할시달서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94. 4. 2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 출 자 : 박양현 사회·도시위원장의 12인
- 나. 제출일자 : 93. 12. 7
- 다. 회부일자 : 93. 12. 23
- 라. 상정일자 : 94. 4. 22

## 2. 제안설명요지(설명자 : 전부진의원)

### 가. 제안이유

- 대구직할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성금관리 및 지원대상자 선정등의 심의위원회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개정코자 함.

### 나. 주요골자

-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 업무를 대행함으로 실효성이 없는 심의위원회 조항 삭제

## 3. 전문위원 검토 의견·요지(전문위원 허면)

본 조례는 이웃돕기성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금고를 설치하고, 그 성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동 조례 제5조제2항중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를 성금의 관리 및 지원대상자에 대해 심의할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로하고, 제3항, 제4항, 제5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제5조1항의 설치근거는 두고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의 구성에 따르도록하여 나머지 부분은 삭제하여 법규정의 명료화를 꾀하는 것으로 생각됨.

4. 토론요지

없음

5. 수정안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반대 : 없음

7. 첨부 : 대구직할시달서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대구직할시달서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를 "성금의 관리 및 지원대상자에 대해 심의할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 제4항, 제5항은 삭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심의위원회) ① (생략)</p> <p>② <u>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u></p> <p>③ <u>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u></p> <p>④ <u>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u></p> <p>⑤ <u>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p>	<p>제5조(심의위원회) ① <u>현행과 같음</u></p> <p>② <u>성금의 관리 및 지원 대상자에 대해 심의할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u></p> <p>③ (삭 제)</p> <p>④ (삭 제)</p> <p>⑤ (삭 제)</p>			